

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

1. 개정 이유

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를 위해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및 서류·제품·현장심사 생략범위를 명확히 하고, 인증번호 부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류심사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인증의 갱신·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.(안 제2조 제1호 개정, 제5호·제6호 신설)
- 나.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함.(안 제6조 신설)
- 다. 인증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60일(공기호흡기 80일)로 변경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.(안 제8조 개정)
- 라. 인증대상 소방장비 품목을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함.(안 제3조 관련 별표1 개정)
- 마. 인증대상 품목확대 및 본문 개정에 따라 별표 및 서식을 이에 맞추어 개정함. (안 별표2~별표6 및 개정 및 별지6호 신설)

- 바. 소방장비 인증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를 위해 관련조항 신설. (안 제15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소방장비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없음